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23 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이해식・박상혁・서영교

한병도 • 서영석 • 박정현

염태영 • 천준호 • 정을호

채현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는 그 임용 절차에서 제외되어 있는바, 주요 직책을 맡게 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관한 사항에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 신설, 제12조, 제18조및 제34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422호) 및 「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4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그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「해양경찰법」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심의・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제7조제3항 및 제4항"을 "제7조제4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제7조제3항 및 제4항"을 "제7조제4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
제34조 단서 중 "제7조제3항 및 제4항"을 "제7조제4항 및 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7조(임용권자) ① (생 략)	제7조(임용권자) ① (현행과 같			
	음)			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총경 이상 경			
	찰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하여			
	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			
	그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			
	에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			
	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			
	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			
	또는 「해양경찰법」 제5조에			
	<u>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</u>			
	의결을 거쳐야 한다.			
<u>②</u> ~ <u>④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⑤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4			
	항까지와 같음)			
⑤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 또	<u>⑥</u>			
는 <u>제3항</u> 및 <u>제4항</u> 에 따라 임	<u>제4항</u> <u>제5항</u>			
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				
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				
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				
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·보관				
하여야 한다.				
제12조(채용후보자 명부 등) ①	제12조(채용후보자 명부 등) ① -			
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				

(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)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 한 사람(경찰대학을 졸업한 사 람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 격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 서 같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(登 載)하여야 한다.

② ~ ⑦ (생 략)

제18조(승진후보자 명부 등)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(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)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 7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34조(행정소송의 피고) 징계처분, 휴직처분, 면직처분,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

<u>제7조제4항 및 제5항</u>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승진후보자 명부 등) ① -
- <u>제7조제4항 및 제5항</u>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4조(행정소송의 피고)

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한다. 다만, <u>제7조제3항 및 제4</u> <u>항</u>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 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.

	<u>제7</u> 조제]4항	및	제5
<u>ŏ</u> }				